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전석기 의원 (찬성자 2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492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3. 26.

라. 회부일자 : 2019. 3. 29.

## 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가.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2조제1호)

나.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.(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)

-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: “12월1일부터” → “11월15일부터”
-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: “15일”→ “10일”

다.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. (안 제11조제4항, 안 제12조제3항, 안 제31조제1항)

- “안전총괄본부장” → “안전총괄실장”
- “안전총괄본부” → “안전총괄실”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   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 제1항	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	자연재난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나목
제2조 제4항 나목	자연재난대책기간(겨울철의 경우):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	자연재난대책기간(겨울철의 경우)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	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 제1호나목
제11조 제4항	방송협의회의 위원장: <u>안전총괄본부장</u>	방송협의회의 위원장: <u>안전총괄실장</u>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제12조 제3항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당연직 위원): <u>안전총괄본부장</u>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당연직 위원): <u>안전총괄실장</u>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제25조 제1항	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: <u>15일</u> 이내	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: <u>10일</u> 이내	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호
제31조 제1항	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: <u>안전총괄본부</u>	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: <u>안전총괄실</u>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별지 제1호 서식	<p>사회재난 피해신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인(성명, 생년월일, 주소)</li> <li>피해내용(발생위치, 시설명, 물량)</li> <li>첨부서류: 피해 입증 사진 등</li> </ul>	<p>사회재난 피해신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인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번호 등)</li> <li>피해자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세대주 여부, 가족수, 고등학생 수, 도시가스 사용 여부, 계좌번호 등)</li> <li>피해내용(발생 일시, 장소, 인명피해, 시설피해 등)</li> <li>확인사항(동일세대 신고여부, 타 시·군·구 피해신고 여부 등)</li> <li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/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/작성방법/처리절차 등</li> </ul>	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지 서식]

- 안 제2조제1항은 ‘미세먼지’를 ‘자연재난’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2019.3.13.일 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‘법’)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‘사회재난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현행 대비 개정안 비교표(안 제2조제1항)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<b>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</b>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<b>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</b>을 말한다.</p>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**사회재난**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

- 2017.7월 서울시의회(도시안전건설위원회)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‘자연재난’에 포함시킨 바가 있음.
- 당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근거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이미 유사한 “황사”가 포함되어 있었고 “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”까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

어 미세먼지가 황사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았던 것임.

-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 발생이 보다 심화되면서 국회 역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만, 이를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,
-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황사, 해염,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 등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현행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여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어서,
- 2019.3.13.일 동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- 다음으로, 안 제2조제4항나목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현행 “12월 1일부터”에서 “11월 15일부터”로 수정하고 있는데, 이는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제1호나목(제정 2016.4.25.)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동절기 운영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.

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제6조(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)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(자연재난을 말한다)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가. 하절기(夏節期)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
나. 동절기(冬節期)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
2.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·복구하는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

- 다음으로, 안 제25조제1항은 사회재난 피해상황의 신고기한을 현행 “15일 이내”에서 “10일 이내”로 수정하려는 것 역시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호(제정 2015.11.30.)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5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)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등"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- 이와 함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인 안 별지 제1호 서식도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개정 2018.11.13.)에 따른 서식(사회재난 피해신고서)으로 교체하여 상위 규정과 통일을 기하고 있음.
-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4항,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(2018.12.31.)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